기 안 용 지

(전화 : 810-1400)

분류기호 문서번호	건관 30013-1611	시행상 특별취급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 3. 1.	구 청 장	시
수신처 보존기간	5년		
시행일자	1989.6.21.		
보조기관	부구청장		
	건설국장 전 결	협조기관	
	건설관리계장		
기안책임자	계장 김 용 신		황문철

경 유	(제1안)
수 신	내 부 결 재
참 조	
제 목	'89 전문건설업 공사 도급한도액 정정결정 고시

1. 전건협 제450 (89.6.20)호 및 건관 30013-19645(89.6.14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상기대호에 의거 결정고시된 '89 전문건설업 공사도급한도액 중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부터 정정통보가 있어 도급한도액을 정정결정 고시코자 합니다.

가. 정정결정 내역

연번	상 호	대표자	소재지	업종	면허번호	도급한도액 정정 전	도급한도액 정정 후
22	수도보건(주)	권세덕	대방동 43-10	보공	82-02-91	568,537,000	1,018,537,000
				철콘	82-10-88	250,000,000	250,000,000

1505-25(2-1) 91.1.7 승인

190mm × 268mm 인쇄용지 (2급) 70g/m²

				상수도	82-13-46	250,000 000	250,000 000

나. 적용기간: 89.7.1 - 90.6.30

다. 처분청: 서울특별시장

따로붙임: 1) '89 전문공사 도급한도액 책정경정조서 1부.

2) 고시문안1부.

(제2안)

수신: 공무처장관 발신: 서울특별시장

참조: 법무담당관

제목: 관보게재 의뢰

1. 건관 30013-19645(89.6.14)호와 관련입니다.

2. '89년도 전문건설업 도급한도액을 경정결정하였기 건설업법시행령 제27

조 규정에 의거 고시코자 하오니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: 고시문 2부. 끝.

(제3안)

수신: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3-10 수도토건(주) 귀하

제목: '89 전문건설업 도급한도액 경정결정통보

1. 전건협 제450 (89.6.20)호와 관련입니다.

2. 대한전문건설업 협회에서'89도급한도액을 경정 산정하여 통보되었기

정정결정 하였으니 89.6.30 까지 면허수첩을 제출하여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제4안)

수신: 서울특별시장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발신: 동작구청장

참조: 건설행정과장

제목: '89전문건설공사 도급한도액 정정 결정보고

1. 건관 30013-19645(89.6.14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의 '89전문 건설업 공사도급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정정결정하고 건설업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의거 관보에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
가. 정정결정사항: 제1안 가항이기시행. 끝.

(제5안)

수신: 서울특별시장

참조: 시민과장

제목: 시정확인 날인의뢰

1. '89년도 전문건설업 도급한도액을 정정결정하였기 건설업법 제 27조 규정에 의거 관보에 게재코자 하오니 시행문에 시정확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정정결정내역: 제1안 가항 이기사항

따로붙임: 1) 시행문 사본 1부.

2) 고시문안 1부. 끝.

고 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 306 호

'89 전문건설업 도급한도액 정정결정 고시

건설업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'89년도 전문건설업 도급한도액을 정정결정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1989. 6. .

서 울 특 별 시 장

가. '89년도 전문건설공사 도급한도액 정정고시

(단위: 천원)

연번	상 호	대표자	영업소재지	업종	면허번호	도급한도액	
						정정전	정정후
22	(주) 수도도건	권재덕	역삼동 43-10	보공	82-02-191	566,537	1,[illegible]
				철콘	82-02-[illegible]	250,000	250,000
				[illegible]	82-13-46	250,000	[illegible]

나. 적용기간: 1989.7.1 - 1990.6.30.